

정보보안심사위원회 규정

□ 제정 : 2017. 5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대학교 보안업무의 효율적 운영, 추진계획의 수립 및 평가, 기타 보안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보안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정보보안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2. 정보보안 관련 규정, 지침 등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3. 보안사고 및 보안위반자의 심사·처리에 관한 사항
4. 각 부서로부터 제청된 각종 보안사항
5. 보안업무 심사분석 및 보안업무 수행상 조정과 협의를 요하는 사항
6. 전산망 신·증설계획과 전산화 용역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
7. 기타 위원장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, 위원 10인 이내, 간사 1인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은 정보보안담당관이 하며, 회무를 총괄한다.
- ③ 위원은 총장이 임명하며, 필요한 경우 외부인을 포함할 수 있다.
-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회의)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에 의해 소집되며,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② 위원회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- ③ 위원회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 처리를 요할 때에는 서면 결의로 진행할 수 있다.

제5조(보고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며, 회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